



PL에서 민법규정의 적용

■ 글 / 정형근 회장 (주)유진공업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전문 8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조는 민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PL법 제8조는 PL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다. PL법은 민법의 특칙이며, 따라서 규정해야 할 몇 가지를 조문으로 규정해 놓고 기타 법적 현상은 민법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의 조항 내지는 해석을 필히 참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실상계의 원칙이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의 원칙은 불법행위에도 원용되며 PL법에도 준용이 가능하다. 과실(過失)이란 잘못이나 허물, 과오, 실착(失錯)이다. 법률에서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일이다.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故意)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형법상으로는 과

실은 책임조건인 하나이며, 고의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이 처벌된다.

과실상계(過失相計)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정도와 범위를 줄이는 일이다. 즉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는 조항이다.

배상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도 및 범위를 참작하는 것이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의 요구에 기(基)하는 법리이다.

둘째, 금전배상의 원칙인데,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의 원칙이 PL법에도 적용된다.

금전(金錢)이란 재화의 교환의 매개물로 국가가 정한 물건을 말한다.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화폐뿐만 아니라, 거래상 화폐로서 통용되는 자유통화도 포함하여 말하는 일이 많다.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지급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이 금전배상(金錢賠償)인데, 원상회복에 대응하는 말이다. 금전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삼는 입법주의를

금전배상주의라고 하는 바, 우리 민법은 이 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민법 제394조와 제7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공공양속(公共良俗)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칭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faithfully)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리적 규범을 법률에 있어서 존중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법률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한다.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함께 법과 도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관념인데, 후자는 질서와 도덕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사회일반적 입장을 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는 당사자의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개별적 입장을 위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동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권리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양자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라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될 수 없는 행위가 권리남용(權利濫用)인데 민법 제2조에 규

정되어 있다.

물건 또는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의 직업 또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가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이다. 선관주의라고도 약칭하는데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과실 또는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선량(善良)한 풍속(風俗)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과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사회질서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개념으로 정초(定礎)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3조에 나타나 있다.

결국, 사회질서(social order)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승인하는 바’이다. 환언하면 사회적 타당성 내지는 사회성(nature for social life)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은 결국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융합하는 것을 그 최대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는 사인(私人)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시인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개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고, 권리의



행사도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는 권리남용으로 간주된다.

그 밖에 자력구제(自力求濟)라고도 하는 자구행위(自救行爲)나 사기 또는 강박(強拍: duress) 등 사법상의 행위가 위법이나 또는 아니냐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메타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를 사회질서에서 구하게 된다. 또한 범죄의 위법성의 성립도 실질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것을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법률규범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이 이론을 더욱 철저히 한다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실정법으로서 존재하는 법규의 효력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을 해하고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이론을 과연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냐하는 것은 법률해석론의 중핵으로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은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타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填補)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이다.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衡平)의 원칙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로서 제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消極的損害)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를 말한다. 전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적극적 손해에 대립되는 말인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소극적 양손해가 모두 배상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인데, 이때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그 본지에 반하므로 손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손익상계이다.

손익상계(損益相界)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얻을 때에는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하는 것이다. 상계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상계는 아니며, 엄밀히 말해서 이득공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되는데, 민법 제 394조, 제763조, 제7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자료(慰籍料:consolation money)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대부분이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것이 보통이다.

또 생명침해(生命侵害)는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형법상으로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한편, 민법상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누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느냐에 관하여는 이견이 분분하고 문제제도 많다.

우선 사망한 본인이 취득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과 소극적 손해의 배상이 있다. 그런데 이밖에 위자료청구도 승계된다고 볼 것이냐가 다투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당연히 승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연 본인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설도 있다.

피해자의 상속인 등 근친자(近親者)가 원시적(原始的)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외에 살해된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소위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승계취득에 대응한다.

인과(因果:cause and effect)는 원인과 결과인데, 불교에서는 먼저 한 일의 값음(retribution)을 지칭한다. 철학에서 인과관계(因果關係:causal relation)란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연관이 있는 관계로, 목적인과 자연인과의 차이가 있다.

불교에서는 인과성(因果性)이라 하여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인과관계(因果關係)는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범(結果犯:Erfolgdelikt)에 대하여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하나이다. 어떤 사실과 어떤 결과와의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만 법률이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이다.

이 설에서도, '그러한 사실'이라는 기초가 될 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하여서는 다시 여러 가지의 설이 나누어진다. 즉, 주관설이 있는데,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하는 설이다.

또 객관설이 있는데, 재판시에 있어서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 및 행위후의 사정이라도 예견가능한(foreseeable)것을 모두 기초로 하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이 있는데 행위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recognizable) 사정 및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하는 설이다.